

3.1.8 대학시설·공간조정위원회규정

제정 2000. 04. 21.

개정 2009. 09. 07.

개정 2022. 10. 0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의 시설공간활용 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. <신설 2022.10.04.>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.

1. 대학내 시설활용공간의 배정 및 조정(재배정, 용도 변경 등)
2. 신축(증·개축 포함)건물의 사전용도 결정
3. 공동 실험·실습시설의 확보
4.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대학내 시설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

제4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,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<개정 2022.10.04.>

②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임기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간사 1인을 둔다.

제8조(회의결과) ①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얻고,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한다.

② 심의한 결과를 심의요청 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, 공간 배정을 시행한다. <신설 2022.10.04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09월 07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4일로부터 시행한다.